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6
----------	-----

2020. 4. 22.(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돈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4월 22일

-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돈 의원)

가. 제안사유

-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2020.1.): 전국 15.6%, 충북 17.2%(17개 시·도 중 7위)

- 이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나. 주요내용

-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안 제3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 수립·시행 사항 (안 제4조)
- 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사항 (안 제5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안 제6조)
-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치료 및 노인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학대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성년후견제도)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대사례의 경우 2017년 4,622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12.2%p 증가하였음.

### <전국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 자료: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p.173

(단위: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사례 <sup>1)</sup>	8,087	7,729	8,687	10,294
학대사례 <sup>2)</sup>	3,818	4,280	4,622	5,188
<b>합 계</b>	<b>11,905</b>	<b>12,009</b>	<b>13,309</b>	<b>15,482</b>

1) 일반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

2)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

- 충북의 경우도, 보합세 속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대 사례의 경우 2018년 139건에서 2019년 175건으로 25.9%p 증가하였음.

### <충북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사례	517	395	484	480	589
학대사례	167	194	165	139	175
<b>합 계</b>	<b>684</b>	<b>589</b>	<b>649</b>	<b>619</b>	<b>764</b>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2항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것임. 또한 같은 조제1항의 “노인”에 대한 정의는 법 제1조의2제5호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sup>1)</sup>’에 대하여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충청북도 내 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도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노인학대 신고접수·현장출동·방문조사 및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를 수행하고 있는 바, 노인에 대한 정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 및 시책 강구에 대한 의무와 그 밖의 노인학대 관련

1) “노인학대관련범죄”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상해·폭행, 감금, 협박, 강간,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등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를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조항들의 취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성년후견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 또는 부족한 사람들의 본인 의사 및 자율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의 복지 관점에서 개별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됨<sup>2)</sup>.

- 특히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있어 성년후견제도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존엄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가족 또는 친족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자력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거나 후견인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음.

※ 「민법」 제9조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 5조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성년후견 등의 이용)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증진과 권익옹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이충은, “2019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2), 한국법학회, 2019.  
‘이충은(2019)은 본 논고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년후견제를 강조하면서, 성년후견제의 인식개선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학대피해노인들에게 성년후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성년후견인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 pp. 316~317.

- **안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는 법 제39조의19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쉼터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한 것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안 제7조**는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신고의무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의무 대상자에 대한 안내,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과 교육 수행에 필요한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교육 의무 대상자가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 이를 위한 지원은 타당함.
- **안 제8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등의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는 학대피해 노인의 사후관리 및 노인학대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타당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해왔고, 광주 시에서도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며, 인천시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노인인권 모니터링단(100명)을 운영하고 있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노인학대 문제를 충청도민 모두가 공동체적 관점 하에 관심을 갖고 예방과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노인학대 예방·치료·보호 등 행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 특히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노인학대는 과거와 달리 노인 인권 및 권익보호 차원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학대 증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성(時宜性)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 참고

## 충청북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 자료

### 1. 충청북도 관련 시설 설치현황

#### 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구 분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청주시	충주시
최초설치	2004. 8. 24	2008. 10. 1
종사자	10명 (남 2/ 여 8)	8명 (남 2/ 여 6)
지원액	419,340천원(국비50%, 도비50%)	335,472천원(국비50%, 도비50%)
관 할	· 중남부권 6개 시군 (청주, 증평, 진천, 보은, 옥천, 영동)	· 북부권 5개 시군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 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구 분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재지	충주시
최초설치	2011. 3. 2.
종사자	4명 (여 4)
입소정원	9명
지원액	188,236천원(국비50%, 도비 50%)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입소자	44	30	29	17	26
이용자	46	87	79	5	34
합 계	90	117	108	2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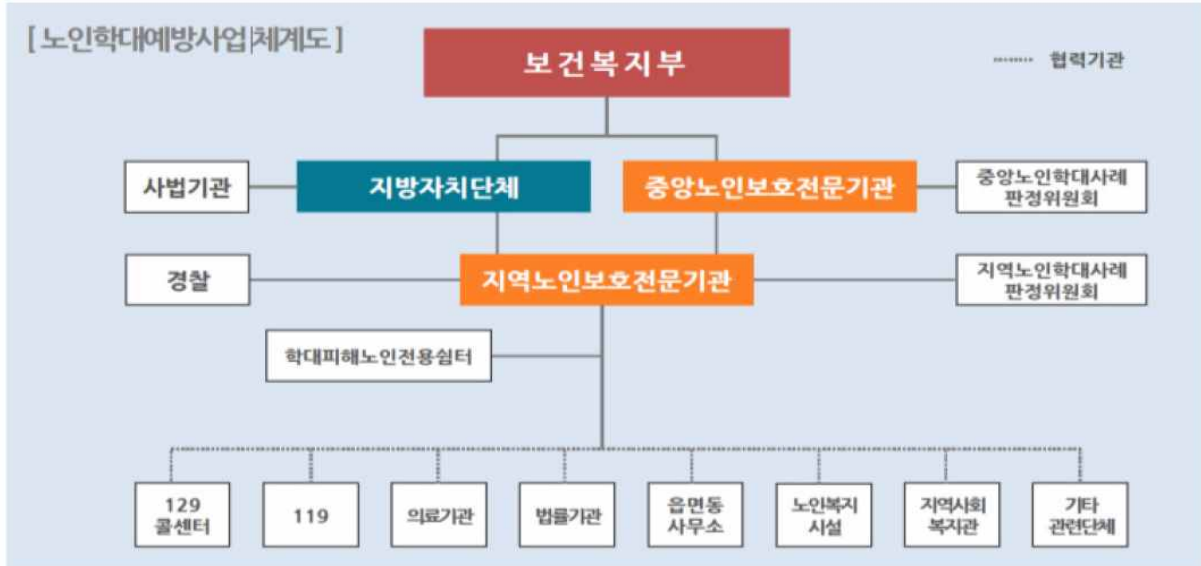
※ 입소자 : 숙식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상  
이용자 :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



## 2. 노인학대 예방사업 체계 및 시·도 역할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 p.216~217.

### 1) 노인학대 예방사업 체계도



### 2) 노인학대 예방사업 시·도 역할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 - 현장점검

- 시·도지사는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주요점검사항: 인사 및 조직관리, 회계처리, 사례관리,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 등

##### - 지도감독 및 설치 지원

- 시·도 지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 지정 및 분관설치 지원

####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시·군·구→광역 시·도→보건복지부)

#### ○ 기타 노인학대 예방 등 지도·감독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호에 따라 보호 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6
----------	-----

발의연월일 : 2020년 4월 13일  
발 의 자 : 박상돈, 최경천, 박형용,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1.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2020.1.): 전국 15.6%, 충북 17.2%(17개 시·도 중 7위)
- 이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안 제3조)
-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다. 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안 제5조)
- 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안 제6조)
- 마.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안 제7조, 제8조)
- 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치료 및 노인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30호
-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19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와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인권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등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모니터링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치료 및 노인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등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한 보조금 등 소요 경비

## 3. 관련조문

- 안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운영)
- 안 제7조(노인인권교육)
- 안 제12조(사업비 등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 요인

-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지원 등

### 나. 추계의 전제: 연중

다. 추계 결과: '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765,24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국도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소계	953,048	953,048	953,048	953,048	953,048	4,765,24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188,236	188,236	188,236	188,236	188,236	941,108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754,812	754,812	754,812	754,812	754,812	3,774,06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